

의안번호	2208553
의 퇴 인	이달희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5D1192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8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9억 2,000만원(연평균 3억 8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(안 제210조)	384	384	384	384	384	1,920	384

주: 본 추계 결과는 현재 출범이 완료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'충청광역연합'에 대하여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향후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9조의2 (사무의 이관)	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·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고, 이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는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10조 (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)	현행법 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제1항제1호 ¹⁾ 준용 -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	의무규정
		현행법 제6장제3절 소속 행정기관 준용 -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1. 의정(議政)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~3. (생략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99조의2 (사무의 이관)	×	국가 또는 시·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, 향후 설치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, 이관 사무의 종류 및 범위, 이관 방식에 따라 소요인력 및 예산규모 등이 상이하여 재정 지원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
2	안 제210조 (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)	○	(의정활동비 지급 규정 준용)
		×	(소속 행정기관 설치 규정 준용)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기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, 향후 설치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,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 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존 운영 중이던 소속 행정기관을 통·폐합하여 일원화하는 등 그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속 행정기관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재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‘충청광역연합’²⁾ 한 곳으로,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³⁾은 있으나 구체적 추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설립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충청광역연합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만 추계

[참고자료] 충청광역연합 개요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2)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 구성

3) 광주전남권, 새만금권, 지리산권, 접경지역권 등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 수에 의정활동비를 곱하여 추계함
- 충청광역연합의 의원 정수는 「충청광역연합 규약」에 따라 16명⁴⁾임
- 의정활동비는 현재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00만원⁵⁾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8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9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의정활동비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충청광역연합 의원 정수(a)	16	16	16	16	16	—
1인당 의정활동비(b)	24	24	24	24	24	—
추가재정소요(a×b)	384	384	384	384	384	1,9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「충청광역연합 규약」제8조(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,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4명
2.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
3. 충청북도의회 4명
4. 충청남도의회 4명

5)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150만원, 보조활동비 50만원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현재 출범이 완료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‘충청광역연합’에 대하여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향후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충청광역연합 개요

□ 충청권 지역 현황

구분	합계	대전	세종	충북	충남
인구 (‘24.10월)	555.6만	144만	38.9만	159.1만	213.6만
면적	16,658.6km ²	539.5km ²	464.9km ²	7,407.0km ²	8,247.2km ²
행정구역	—	5개 구, 82동	1읍9면12동	3개 시, 8개 군	8개 시, 7개 군
예산규모 (‘24년)	25조2,912억원	6조5,329억원	1조9,059억원	8조184억원	8조8,340억원
지역내 총생산 (‘22년 기준)	271.9조원	49.5조원	14.5조원	79.4조원	128.5조원

□ 설치 개요

- (설치근거) 「지방자치법」 제205조, 충청광역연합 규약
- (설치형태)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 ‘특별지방자치단체’
- (주요업무) 초광역 협력을 위해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 및 국가 위임사무 등 충청광역연합 규약 내 합의된 공동사무 추진

- ▶ 시도이관(20): (인프라) 도로, 철도, 교통, UAM (사회·문화) 문화, 관광, 환경, 생태 (산업·경제) 첨단바이오, 미래모빌리티 부품, 첨단 코스메틱 등 (국제교류) 국제교류협력
- ▶ 국가위임(1): (인프라)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·운영

□ 조직 현황

- (기구·정원) 2개 사무처 60명(연합 사무처 41, 연합의회 사무처 19)
 - (연합사무처) 1처 3과 11팀, 41명
 - (연합의회 사무처) 1처 1담당관 3전문위원(직속) 2팀, 19명

□ 충청광역연합의회

- (의원정수) 16명(시도별 4명 균등 배분)
- (의원임기) 임기 2년(연임 제한)
- (의장·부의장) 의장 1명, 부의장 2명
- (주요업무)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, 연합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, 구성 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, 예산의 심의·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